

2021학년도

**제20회 영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 회의자료**

- 일시 : 2021. 4. 22.(목) 11:00
- 장소 : 본교 운영위원회 회의실

영원초등학교장

2021학년도 제20회 학교운영위원회(정기회) 회순

- 국민의례(생략)
- 학교장, 위원장 인사
- 개회선언
- 보고사항
- 안건 심의

1. 2021학년도 학교급식 운영 변경계획(안)
2. 2021학년도 학생 건강검사기관 선정(안)
3. 2021학년도 인성인권교육 계획(안)
4. 2021학년도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실시 계획(안)
5. 2021학년도 학교규칙 개정(안)
6. 2021학년도 유치원 규칙 개정(안)
7. 2021학년도 유치원 방과후과정 연간 운영 변경계획(안)
8. 2020회계연도 영원초등학교 발전기금회계 세입·세출결산(안)
9. 2020학년도 영원초등학교 학교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10. 2021학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 타
- 폐 회

2021학년도 학교급식 운영 변경계획(안)

안전 번호	1
----------	---

발의연월일: 2021. 4.
제안자: 학교장
담당자: 교사 문창호

1. 관련근거

- 가. 초중등교육법 제 31조
- 나. 학교급식법시행령 제 2조
- 다. 영원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60(2021.2.8.)

2. 목적

2021년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급식운영 변경계획에 대하여 심의를 받고자 함

3. 변경 주요내용

가. 학교급식 운영의 실제

- 1) 학교급식 실시현황[교직원 급식비 4,300원 → 4,600원(300원 인상)]
- 2) 영양관리 및 식생활지도(2021학년도 1인 1식 영양기준량 재설정)

2021학년도

**2021. 영원초등학교
급식운영 변경계획서(안)**

영원초등학교

1. 학교급식 운영의 실제

1. 2021학년도 교직원 급식비 인상

가. 근거

- 1) 교육지원과-687(2021.1.22.)-2021년도 교특회계 급식사업 주요사항
- 2) 교육지원과-5145(2021.3.9.)-2021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계획
- 3) 교육지원과-5100(2021.3.9.)-2021년도 학교급식비 지원계획

나. 주요 내용

- 1) 무상급식비: 유치원(2명) - 3,000원, 초등(29명) - 3,200원
- 2) 정읍시친환경지원금: 유치원(2명), 초등(29명) 총 31명, 100명이하(330원)
- 3) 정읍시 자체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를 추가 지원
- 4) 교직원 급식비는 중학교 급식비 이상으로 징수

다. 급식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단위/원)

구분	식품비	운영비	계	친환경농산물	정읍시 친환경지원금	합계	비고
유치원	2,740	260	3,000	245	330	3,575	
초 등	2,910	290	3,200	256	330	3,786	
교직원	3,570	330	3,900	361	330	4,591	

- 교직원 급식비 산출근거: 교육지원과-687(2021.1.22.)
- 2021년 중학교급식비 3,500원+소규모학교지원금 400원+친환경농산물 361원+정읍시 친환경지원금 330원 = 4,591원 → 결정단가: 4,600원
- 2021년 3월부터 소급하여 적용

○ 교직원 급식비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통해 결정하되,

학생급식비 **【무상급식비+기타지원금[친환경농산물(쌀포함), 지자체지원금,**

소규모학교지원금 등】의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

- 유·초·중학교: 중학생 급식비 이상으로 징수

○ 교직원 급식비 징수방법(예시)

문항	급별	중학생 이상 무상급식비 기준		급식비	기타 지원금(예시)				계
		급식비	소규모 추가 지원금		친환경 농산물(쌀포함)	자매단체 지원금	Non-GMO	채식	
	초(1-50명)	3,500	400	3,900	361	30			4,291
	초(51-100명)	3,500	300	3,800	361	30			4,191

2. 2021학년도 1인 1식 영양기준량 재설정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1항에 의한 학교급식 영양기준량 산출

구분	성별	에너지 (kcal)	단백질 (g)	비타민A(R.E.)		티아민(mg)		리보플라빈(mg)		비타민C(mg)		칼슘(mg)		철분(mg)		니트롬(mg)	
				평균	권장	평균	권장	평균	권장	평균	권장	평균	권장	평균	권장	평균	권장
				필요량	섭취량	필요량	섭취량	필요량	섭취량	필요량	섭취량	필요량	섭취량	필요량	섭취량	필요량	섭취량
유치원	남성	467.0	6.7	70.00	100.00	0.14	0.17	0.20	0.24	10.00	13.40	134.00	200.00	17.00	2.40	900.00	900.00
	여성	467.0	6.7	70.00	100.00	0.14	0.17	0.20	0.24	10.00	13.40	134.00	200.00	1.70	2.40	900.00	900.00
초등학교 (저학년)	남성	534.0	8.4	97.00	134.00	0.20	0.24	0.24	0.30	13.40	20.00	184.00	234.00	2.40	3.00	900.00	900.00
	여성	500.0	8.4	90.00	134.00	0.17	0.20	0.20	0.24	13.40	20.00	184.00	234.00	2.40	3.00	900.00	900.00
초등학교 (고학년)	남성	634.0	11.7	127.00	184.00	0.27	0.30	0.30	0.37	18.40	23.40	184.00	267.00	3.00	4.00	900.00	900.00
	여성	567.0	11.7	117.00	167.00	0.24	0.27	0.27	0.30	18.40	23.40	184.00	267.00	3.00	4.00	900.00	900.00
교직원 및 기타	남성	800.0	18.4	174.00	250.00	0.34	0.40	0.44	0.50	25.00	33.40	194.00	234.00	2.70	3.40	1,300.00	1,300.00
	여성	634.0	15.0	150.00	217.00	0.30	0.37	0.34	0.40	25.00	33.40	194.00	234.00	3.70	4.70	1,300.00	1,300.00
학교영양 영양기준량		608	12	124.8	180.0	0.25	0.30	0.30	0.35	18.8	25.5	185.5	242.2	3.5	3.7	1042	1042

가.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한 끼의 기준량을 제시한다.

나. 영양관리기준은 계절별로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영양공급량을 평가한다.

다. 에너지는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pm 10\%$ 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의 에너지 비율이 각각 55~70% : 7~20% : 15~30%가 되도록 한다.

라. 단백질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 공급에너지 중 단백질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마.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권장 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한다.

구분	인원수
유치원-남성	2
유치원-여성	0
초등학교(저학년)-남성	6
초등학교(저학년)-여성	9
초등학교(고학년)-남성	10
초등학교(고학년)-여성	4
교직원-남성	7
교직원-여성	10
총원	48

※ 2021년 4월 기준

2021학년도 학생건강검사기관 선정사항(안)

안전 번호	2
----------	---

제출일자 : 2021년 4월
제 출 자 : 영원초등학교장
담 당 자 : 정 은 영

1. 제안이유

- 학교건강검사규칙(일부개정 2006.01.10)에 의거
- 학생의 정기적이고 내실 있는 건강검진을 통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

2. 관련근거

- 학교보건법 제7조 (건강검사의 실시)
- 학교보건법 제7조의 3 (건강검사 기록)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 2(개정 2006. 1. 10)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 검진기관 선정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가능

3.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규정에 의한 검진기관을 선정하되, 검사시설 및 장비, 검사인력, 검사의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교장이 검진기관과 계약 체결

나. 건강검진기관 선정 - 의과검진 1개, 구강검진 1개 기관

다. 2021학년도 검진기관(전년도와 동일)

- 의과검진 : 아산병원
- 구강검진 : 조은치과의원

위 기관으로 학생건강검진을 추진하고자 함.

2021학년도 인성인권교육계획(안)

안건 번호	3
----------	---

제출년월일 : 2021. 4.

제 출 자 : 학 교 장

담 당 자 : 박 다 승

1. 제안사유

-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에 맞게 인성교육의 역할 강화
- 우리교육과 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성교육을 통한 민주시민육성
- 인성에 기반한 따뜻한 사회 구현을 위해 교육공동체와 범사회적 노력 필요
- 인성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육성을 위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실효성 있는 2021학년도 학교 인성교육계획 수립, 시행

2. 주요내용

사 업 명	주요 내용
인성 중심 학교 환경 조성	▷ 인성 친화적 학교 환경 함께 만들기
학교 인성역량교육	▷ 민주적 학교문화조성 ▷ 교육과정을 통한 학생인성역량 강화 ▷ 교원연수를 통한 인성교육 지도 역량 강화
가정 및 지역사회 협력과 지원	▷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추진 기반마련 및 평가	▷ 인성교육 추진 기반 마련 ▷ 평가 계획

붙임 2021학년도 인성교육계획 1부.

2021학년도 학교인성·인권교육 운영계획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학교

영원초등학교

1 추진 배경

-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에 맞게 인성교육의 역할 강화
- 우리교육과 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성교육을 통한 민주시민육성
- 인성에 기반한 따뜻한 사회 구현을 위해 교육공동체와 범사회적 노력 필요
- 인성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육성을 위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실효성 있는 2021학년도 학교 인성교육계획 수립, 시행

2 추진 목표

마음의 힘을 가꾸어 꿈과 끼를 키워가는 행복한 영원 공동체

학교 교육 목표와 경영 중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인성 핵심 가치 덕목을 중점 지도함으로써 「바른 인성 역량을 갖춘 창의 융합형 어린이」로서의 생활 습관화를 유도한다.

3 추진 방향

- 학생 눈높이 맞는 자치와 교육과정 중심의 인성역량함양 중심의 인성·인권교육 강화
- 학생, 교사, 학부모 의견수렴을 통한 학교현실에 맞는 인성·인권교육계획 수립 및 실행
- 체험학습과 체육예술교육활성화를 통한 인성·인권교육
- 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인성·인권교육 기반 마련
- 배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학생 활동 및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실시

4 주요 운영 내용

사업명	주요 내용
인성 중심 학교 환경 조성	▷ 인성 친화적 학교 환경 함께 만들기
학교 인성역량교육	▷ 민주적 학교문화조성 ▷ 교육과정을 통한 학생인성역량 강화 ▷ 교원연수를 통한 인성교육 지도 역량 강화
가정 및 지역사회 협력과 지원	▷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추진 기반마련 및 평가	▷ 인성교육 추진 기반 마련 ▷ 평가 계획

①자기관리역량

②심미적감성역량

③의사소통역량

④갈등관리역량

⑤공동체역량

사업명	세부 추진내용	담당	시기	평가지표				
				①	②	③	④	⑤
인성중심 학교환경 조성	추진과제 인성 친화적 학교 환경 함께 만들기							
	▷ 교실 안 생태환경 조성 -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교실환경 가꾸기	환경	3월		√			
	▷ 소통의 공간 “상담실” 운영 - Wee 센터와 연계한 학생상담실 활용 운영	인성 인권	연중		√	√		
	▷ 교실 밖 환경보전 활동 - 학교 통행로 정비 - 꾸준한 환경 정화 활동	환경	연중		√			
학교 인성 역량 교육	추진과제1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							
	▷ 함께 세우는 인성교육계획 - 학생·학부모·교사 간의 소통을 통한 의견 수렴 - 교무회의, 교육과정설명회 활용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설문조사 활용)	인성 인권	3월			√		√
	▷ 진솔한 소통의 시간, 상담주간 운영 - 학기별 1회 상담주간 운영 - 인성 중심 학생생활 맞춤형 상담 실시	인성 인권	4월 9월			√		√
	▷ 행복한 ‘다모임’ 운영 - 다모임 활동으로 인한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 학생과교 교직원이 참여하는 다모임 운영 -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구성원들의 대화 시간 마련 - 여러 교육활동 시 함께 하는 두레 조직	인성 인권	연중	√	√	√	√	√
	추진과제2 교육과정을 통한 학생 인성역량 강화							
	▷ 학년별 인성주제를 반영한 수업시간 운영 지원 - 학교 자체 인성교육 요소 선정 및 교육과정 반영 - 학년별 교과 및 창체 주제통합 및 프로젝트 수업 - 인성인권교육주간 운영(학기별 1회)	연구 담임	3월	√	√	√	√	√
	▷ 초등성장평가제를 통한 참학력 성장 역량 강화	평가	연중	√				
	▷ 독서교육을 통한 인성역량 함양 - 독서한마당 등 다양한 독서행사(온책읽기 등)	도서	연중	√	√	√	√	√
	▷ 체육을 통한 에너지 발산 - 스포츠 데이를 통한 학년별 집중운동 실시 - 틈새 신체활동놀이 운영(점심시간) -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종목의 다양화)	체육	연중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예술교육 활동을 통한 인성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강사 지원에 따른 국악교육 활동 - 정음농악 운영 - 방과후수업 연계로 다양한 악기지도 실시 	인성 인권 방과후	연중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하는 '인권의 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의 날을 통한 친구 사랑하는 마음 갖기 - 다모임 두레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실시 	인성 인권	4월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학교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예방 어울림프로그램 운영 - 기본생활습관 및 학급 내 생활규칙 마련 	인성 인권	연중	✓	✓	✓	✓	✓	
추진과제3 교원 연수를 통한 인성교육 지도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내 인성·인권 관련 교원 연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 또는 원격연수를 활용한 교원 연수 이수 - 교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신고자 의무 교육실시 	인성 인권	연중	✓	✓	✓	✓	✓	
가정. 지역사회 협력과 지원확대	추진과제1 가정과 지역사회의 인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회와 연계한 인성·인권 교육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설명회를 활용한 인성, 인권 교육 (학기당 1회) 	인성 인권	3월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배려와 나눔의 장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향예술제 운영 	교무	11월		✓	✓	✓	✓	
인성교육 추진 기반마련 및 평가	추진과제1 인성교육 추진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성교육에 대한 의견 수렴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홈페이지에 의견 수렴 방 메뉴 탭 설치 - 의견 수렴 후 반영 시스템 구축 (학부모회, 다모임 등) 	정보	3월	✓		✓	✓	✓	
	추진과제2 평가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별 인성교육 실태 조사 실시 	연구	12월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배움과 성장의 날' 운영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운영 - 의견 수렴 후 향후 계획 수립에 반영 	연구	매월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원교육가족 만남의 날 운영(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기말 교육과정 워크숍을 활용한 인성교육 협의회 실시 - 의견 수렴 후 향후 계획 수립에 반영 	연구	11월	✓	✓	✓	✓	✓		

2021학년도 테마식현장체험학습 실시 계획 심의(안)

안건 번호	4
----------	---

제출년월일 : 2021. 4.

제 출 자 : 학 교 장

담 당 자 : 이 지 윤

1. 심의 목적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이 지역사회 확산에 따른 확진자 재증가에 따라 학생의 건강과 학습권 보호 및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2021학년도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운영 변경 내용을 심의 받고자 함

2. 심의 내용

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현장체험학습 교육과정 변경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기 교육과정내용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교육과정 변경내용
2021. 10.14(목)~15(금) 1박 2일	학기별 1회씩 당일 운영 (2회)

나. 2021학년도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변경 운영(안)

- 현장학습 운영 매뉴얼에 따라 전라북도 내에서 당일 진행을 원칙으로 함
 - 일시 : 2021학년도 학기별 1회씩 당일 운영
 - 대상 : 영원초등학교 5-6학년 학생 및 인솔교사
- 체험학습 장소는 코로나19 추이를 살펴본 후 교무회의를 통해 선정하기로 함

예) 순창 : 총댕이마을 사격장, 서바이벌게임, 장군목
남원 : 남원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남원항공우주천문대
군산 : 군산시간여행마을(역사박물관, 일본인가옥, 동국사, 초원사진관), 선유도
완주 : 에코어드벤처, 밀리터리 테마파크 등

- 체험학습 운영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전라북도교육청 체험학습 지침에 따라 운영되며 상황 악화 시 취소될 수 있음

다. 예상 소요 경비

산출내용	내역		소계	비고
차량임대료	500,000원 * 2대		1,000,000	도내 기준
여행자보험	3,300원 * 10명 * 2회		66,000	
식비 및 간식비	식비	8,000원 * 10명 * 2회	160,000	
	간식비	3,000원 * 10명 * 2회	60,000	
체험비 및 입장료	50,000원 * 10명 * 2회		1,000,000	변경 가능
운영비	30,000원 * 10종 * 2회		600,000	
총계			2,886,000	

※ 예산운영계획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안전교육 지도 계획

- 1) 안전교육 일시: 현장학습 출발일 기준 2일 전 실시
- 2) 대상: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참가학생(5~6학년)
- 3) 내용(단체 활동 시 유의 사항)
 - 간편한 복장을 착용하여 준비물 철저히 준비(짧은치마, 슬리퍼, 하이힐 불가)
 - 단체 행동에서 이탈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개인 행동을 금함
 - 승하차 시 질서 유지
 - 자연 보호에 힘쓰며 유적지 및 공공시설물 등의 훼손행위 하지 않음
 - 도보 이동 시에는 개인행동을 삼가고 질서를 지키며 대형에서 이탈 금지

- 긴급한 환자의 발생이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다른 학생에게 미루지 말고 즉시 담임교사나 인솔교사에게 알려서 상황에 대처 등

마. 교직원 청렴 교육 계획

- 1) 관련규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직자 행동강령 규정
- 2)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추진과 관련하여 어떠한 업체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공무원(각 학교의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 할인권 등), 향응(식사, 접대 등), 편의(교통, 숙박 등)를 제공받을 수 없음

2021. 학교 규칙 제개정 심의(안)

안건 번호	5
----------	---

발의년월일:

2021. 4.

제안자:

영원초등학교

담당자:

교사 오미라

1. 제안사유

2013년 이후 법령 개정 등의 이유로 제·개정이 필요함

가. 근거

- 1) 초·중등 교육법 제 48조 제 5항
- 2) 전라북도 2021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

나. 개정 내용

- 1) 제 4장 13조 출결 신설
- 2) 제 14조 교내체험학습 일수 상세화

2. 심의안건

가. 학교 규칙 신·구 비교 심의

- 붙임 1. 학교 규칙 신·구 대조표 1부
2. 학교규칙(구) 1부.
3. 학교규칙 개정안 1부. 끝.

학교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영원초등학교

순	장	조항	조명	현행	개정
1	제4장	제13조	출결	<p><u>신설</u></p>	<p>(제13조(출결)) ① 학생은 제10조에 따라 교장이 정한 수업 일에 등교하여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교하지 아니하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순회 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교육감의 지침에 따라 교장이 정한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이하 “원격수업 등”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경우 나.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원격수업 등을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병원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학생 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등교하지 아니하고 수업에 참여하는 경우 <p>②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이 결석, 지각·조퇴·결과 등을 하기 전에 담임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호자 또는 담임은 결석계를 제출하여 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사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2	제4장	제14조	체험학습	<p>① 학교장은 체험학습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계획·추진할 수 있고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출석 수업으로 처리할 수 있다.</p> <p>㉠ 개인 교환학습 ㉡ 단체 교환학습 ㉢ 교외체험학습</p> <p>② 체험학습을 위하여 교환학습을 의뢰 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하여야 하며, 승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 의뢰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의뢰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단체 교환학습을 위하여 놓어촌 학교 잉여교실을 사용하고자 시설 사용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승인 불가능할 시는 그 사유를 밝혀 신청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신청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기타 체험학습과 관련된 사항은 매년 초 전라북도교육청 체험학습 추진 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한다.</p>	<p>① 학교장은 체험학습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계획·추진할 수 있고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출석 수업으로 처리할 수 있다.</p> <p>㉠ 개인 교환학습 ㉡ 단체 교환학습 ㉢ 교외체험학습</p> <p>② 체험학습을 위하여 교환학습을 의뢰 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하여야 하며, 승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 의뢰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의뢰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단체 교환학습을 위하여 놓어촌 학교 잉여교실을 사용하고자 시설 사용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승인 불가능할 시는 그 사유를 밝혀 신청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신청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u>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하고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u>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은 사용 불가하다.</p> <p>⑤ 기타 체험학습과 관련된 사항은 매년 초 전라북도교육청 체험학습 추진 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한다.</p>
3				제13조~39조	제 14조~ 제40조로 변경

영원초등학교 학칙

제정 : 2002년 9월 2일
개정 : 2006년 3월 7일
개정 : 2009년 4월 23일
개정 : 2011년 4월 25일
개정 : 2012년 3월 29일
개정 : 2013년 2월 14일
개정 : 2020년 9월 23일
개정 : 2021년 4월 00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영원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전북 정읍시 영원면 영원로 1087번지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학기·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5년으로 한다.

제5조(학기)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 2학기는 1학기 종료일부턴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등)

-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이 하며,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여름방학 휴업
 3. 겨울방학 휴업
 4. 학기말 휴업
 5. 개교기념일(5월 1일)
 6. 교육자 대회일
 7. 학교장 재량휴업(단기방학)
 8. 매주 토요일
- ② 제①항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학교장 재량으로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관할 교육지원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①항 2호 내지 4호의 여름·겨울 및 학기말 휴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조절할 수 있다.

제3장 학급 수 및 학생 정원

제7조(학급 수) 본교의 학급 수는 당해년도 학년별 학생정원과 전라북도교육감이 정하는 학급 당 학생정원에 따른다.

제8조(학생정원) 본교의 학생정원은 전라북도교육감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급생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한다.
3. 재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4. 기타 전라북도교육감이 정하는 자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

제9조(교육과정 운영)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 교육과정 과 전라북도 교육감이 정한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그리고 정읍교육지원청의 교육과정 운영 관련 장학 지침에 의거 본교 교과 과정을 편성·운영한다.

제10조(수업일수) 본교의 수업 일수는 매 학년도 190일 이상으로 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 ③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학년의 수업일수로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교과) 전 학년의 교수·학습에 필요한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과에 따른다.

제12조(수업운영 방법 등)

- ① 수업시간의 운영에 필요한 일일시정은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수업시간은 1시간을 40분단위로 운영하되 80분 단위로 운영하는 등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특별활동 운영 등 교육상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하게 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특정 교육활동에 대하여 시간에 구애 없이 운영을 허가 할 수 있다.

제13조(출결)

- ① 학생은 제10조에 따라 교장이 정한 수업일에 등교하여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교하지 아니하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교육감의 지침에 따라 교장이 정한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이하 “원격수업 등”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경우

나.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원격수업 등을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병원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경우

가.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학생

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등교하지 아니하고 수업에 참여하는 경우

- ②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이 결석, 지각·조퇴·결과 등을 하기 전에 담임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호자 또는 담임은 결석계를 제출하여 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사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체험학습)

- ① 학교장은 체험학습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계획·추진할 수 있고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출석 수업으로 처리할 수 있다.
- ㉠ 개인 교환학습
 - ㉡ 단체 교환학습
 - ㉢ 교외체험학습
- ② 체험학습을 위하여 교환학습을 의뢰 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하여야 하며, 승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 의뢰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의뢰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단체 교환학습을 위하여 농어촌 학교 잉여교실을 사용하고자 시설 사용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승인 불가능할 시는 그 사유를 밝혀 신청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신청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하고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은 사용 불가하다.
- ⑤ 기타 체험학습과 관련된 사항은 매년 초 전라북도교육청 체험학습 추진 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제15조(평가)

-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교 교육계획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 ② 평가는 성적산출의 목적이 아닌 성취기준, 평가기준에 따른 성취도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

- ③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영원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제5장 과정의 수료 및 졸업의 인정

제16조(수료, 졸업)

-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2/3 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17조(조기진급 및 졸업)

- ①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 하고자 하는 경우 초등학교는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중·고등학교는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 ②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졸업 하고자 하는 경우 초등학교는 5학년에서, 중·고등학교는 2학년에서 조기졸업할 수 있다.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교과목을 조기에 이수할 수 있다.

제18조(대상자의 선정기준)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 ① 초등학교 학생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즐거운 생활)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 또는 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으로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픽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제19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은 매 학년 초 1개월(3월 말) 이내에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년 초 2개월(4월 말) 이내에 한다.
-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제4조의 기준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진급·졸업대상자”라 한다)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 ④ 각급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⑤ 조기진급·졸업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 ⑥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기준 및 절차)

- ① 각급학교의 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 없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 ②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초등학교 학생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 ㉡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 ③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제21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4항에 따른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제6조제3항에 따른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 ② 제7조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장 입학·전학 편입학 및 재입학

제23조(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초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제24조(입학자격)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및 제20조에 의거 영원면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서를 받은 아동으로 한다.

제25조(전·편입학) 본교의 전·편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4조에 의거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26조(재입학)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가 다시 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연도 학급당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유예 당시 학년으로 학교장이 입학할 수 있다.

제27조(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전·편입학서류)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 외에 이전에 재학한 학교의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전학의 절차)

- ① 학생의 주소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이 전학한 때에는 전·입학한 학교의 장은 전출한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고, 전출한 학교의 장은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③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제8장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제30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 ①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당해 학교장이 의무교육 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학교장은 보호자와 면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의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취학의무의 면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④취학의무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 ①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는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②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9장 특수교육

제32조(특수교육)

- ① 극심한 학습부진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가 어려운 어린이는 특수아동 판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 특수학급에 입급 시켜 특별지도를 할 수 있다.
- ② 학습 부진아의 선별은 1학기 초에 2회 이상의 판별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③ 학습활동이 부진한 어린이는 방학 중의 기간을 이용하여 보충지도를 받게 할 수 있다.
- ④ 장애인(특수교육대상자) 차별 금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1항)
 - ㉠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
 - ㉡ 장애를 이유로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인의 전입을 거절하지 않는다.
 - ㉢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장애인(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 대한 차별 금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2항)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 ㉡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 ㉔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 ㉕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 ⑥ 통합교육(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
 - ㉖ 학교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㉗ 학교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㉘ 학교장은 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 ⑦ 개별화교육지원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 ㉙ 매 학년의 시작일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되,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구성한다.
 - ㉚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고, 장애특성 및 정도를 고려한 개별화교육을 실시한다.
 - ㉛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정읍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진단·평가 및 재배치를 요구한다.

제 10장 수익자부담교육비 기타의 비용징수

제33조(수익자부담교육비) 수익자부담교육비 징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4조(기타의 비용징수) 기타의 비용징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장 학생포상 및 징계

제35조(학생 포상 등)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의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이하 '학교 생활 규정'이라고 한다)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제36조(학생 징계) 삭제

제12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7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장은 학생의 자치 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8조(어린이회 구성) ① 건전한 자치활동으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학생들의 의사를 교육활동에 반영하기 위하여 전교 어린이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② 어린이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③ 학생자치활동은 본교교육과정 자율활동계획에 의해 운영한다.

제39조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13장 학칙개정

제40조(학칙개정 절차) ① 학교장은 학교규칙의 개정안을 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발의하고 학교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② 최종시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공포 한다.

③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된 제정위원회에 의하며, 특히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 반영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된다.
2. 이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행한다.

2021. 4.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p><u>신설</u></p>	<p>(제13조(출결)) ① 학생은 제10조에 따라 교장이 정한 수업일에 등교하여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교하지 아니하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1. 2. 0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교육감의 지침에 따라 교장이 정한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이하 “원격수업 등”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경우 나.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원격수업 등을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병원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학생 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등교하지 아니하고 수업에 참여하는 경우 <p>②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이 결석, 지각·조퇴·결과 등을 하기 전에 담임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호자 또는 담임은 결석계를 제출하여 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사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제13조~제39조</p>	<p>제14조~ 제40조로 변경</p>

2021학년도 유치원 규칙 개정(안)

안 건	6
번호	

발의년월일 : 2021. 4.

제 안 자 : 병설유치원장

담 당 자 : 최혜현

1. 제안이유

-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인정 범위를 [유치원을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현장 실습,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연간 최대 30일까지 수업으로 인정하였으나, 전라북도 『2021학년도 교외 체험 학습 운영계획』에 따라 감염병 위기 경보 " 심각,경계단계" 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시키고자 함.

2.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30791호(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교외체험학습 인정 근거신설
- 전라북도교육청 정책정보관-11147(2020. 12. 17.)
- 학교교육과-21684(2020. 12. 31.)

2. 심의내용

- 유치원규칙 신·구 비교 심의

붙임 유치원규칙 신·구 비교 심의 1부
유치원 규칙(2차 개정) 1부. 끝.

유치원 규칙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순	현 행	개정 및 신설내용	비고
제4장 제10조	제 4 장 교육내용 및 교육일수	제 4 장 교육내용 및 교육일수	
	<p>제10조(교육일수)</p> <p>① 본 원의 교육과정 교육일수는 년 180일 이상으로 하며,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의 운영등 교육과정에 필요한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업일수의 10분의 1범위에서 교육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p> <p>② 2법 제31조제1항·제3항에 따른 휴업명령이나 휴원처분에 따라 휴업하거나 휴원하는 경우: (해당 휴업기간 또는 휴원기간)에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p> <p>③ 다음의 경우 출석으로 인정 가. 질병, 부상으로 유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연간 30일까지 인정(질병확인서 및 증빙자료 첨부)</p> <p>④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교외체험학습 인정일은 30일까지이며 절차는 전라북도 교육청 지침에 따른다</p>	<p>제10조(교육일수)</p> <p>① 본 원의 교육과정 교육일수는 년 180일 이상으로 하며,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의 운영등 교육과정에 필요한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업일수의 10분의 1범위에서 교육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p> <p>② 2법 제31조제1항·제3항에 따른 휴업명령이나 휴원처분에 따라 휴업하거나 휴원하는 경우: (해당 휴업기간 또는 휴원기간)에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p> <p>③ 다음의 경우 출석으로 인정 가. 질병, 부상으로 유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연간 30일까지 인정(질병확인서 및 증빙자료 첨부)</p> <p>④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한다.</p> <p>가. 원장허가를 받은 “유치원을 대표한 경기·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교환학습, 현장(체험) 학습 등”하지 못한 경우 연간 최대 30일까지 수업으로 인정한다.</p> <p>나. 유치원 규칙의 범위에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사유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단,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은 사용 불가)</p> <p>다.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 (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의 경우전일)신청서 제출하고, 체험학습 종료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한다.</p> <p>라. 유아가 유치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한다.</p>	④ 항 내용 첨부 및 수정

영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제정 2013. 3. 01

1차 개정 2020. 9. 23

2차 개정 202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유아를 교육하고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유치원은 영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하 '본원' 이라 한다) 이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 원은 전라북도 정읍시 영원면 영원으로 1087번지에 위치한다.

제 2 장 교육연한·학기 및 휴업일

제4조(교육연한) 본 원의 교육연한은 연령별 1년으로 하며, 제1학기(3월1일부터 여름방학 종료일까지)와 제2학기 (여름방학 종료일 익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 로 한다.

제5조(휴일) 본 원의 휴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3. 휴가 (하계, 동계, 학년말)
4. 영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정하는 휴업일
5. 기타 휴일

- 천재지변 또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 때는 임시 휴원을 할 수 있다.

제 3 장 학급편성 및 원아 정원

제7조(학급편성) 본 원의 학급 수는 전라북도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원아정원) 본 원의 원아 정원은 전라북도교육청 학급당 원아수용지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장 교육내용 및 교육일수

제9조(교육과정) 본 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유치원 교육과정과 전라북도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따른다.

제10조(교육일수) ①본 원의 교육과정 교육일수는 년 180일 이상으로 하며,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의 운영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업일수의 10분의 1범위에서 교육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②2법 제31조제1항·제3항에 따른 휴업명령이나 휴원처분에 따라 휴업하거나 휴원하는 경우: (해당 휴업기간 또는 휴원기간)에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③다음의 경우 출석으로 인정

가. 질병, 부상으로 유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연간 30일까지 인정(질병확인서 및 증빙자료 첨부)

④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가. 원장허가를 받은 “유치원을 대표한 경기·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교환학습, 현장 (체험) 학습 등”하지 못한 경우연간 최대 30 일까지 수업으로 인정한다.

나. 유치원 규칙의 범위에서 감염병 위 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 체험학습의 승인사유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단, 위기경보 “관심,주의 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은 사용불가)

다.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 (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의 경우(전일)신청서제출하고, 체험학습 종료후 7일 이내보고서 제출한다.

라. 유아가 유치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제11조(교육시간) 본 원의 하루 교육시간은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으로 운영하며 교육과정운영시간은 4~5시간, 방과후과정은 교육과정 이후 학부모 요구와 지역실정에 따라 융통성있게 운영한다.

제 5 장 입학, 퇴학, 졸업 및 수료

제12조(입학자격) 본 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로 하되, 그 해 전라북도 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초등학교 입학 유예자도 포함한다.)

제13조(입학시기) 정원의 범위 내에서 연중 입학 할 수 있다.

제14조(입학결정) 본원에 입학하려는 자 중 전라북도 교육청 학급당 유아수용 지표기준에 의하여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 - 처음학교로」 입학자결정과 그 해 본 원의 입학결정 세부계획에 의한다.

제15조(편·입학) ① 본 원은 타 지역 공립유치원에서 재학하던 중 가족이 거주지를 이전한 원아의 경우 정원의 10%범위 내에서 편·입학을 시킬 수 있다.

② 본 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여 다음연도에 재입학을 할 때는 재입학 희망서를 제출한 후에 재입학할 수 있다.

제16조(퇴학명령) 원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결석한 자.
2. 질병 및 기타 사유로 타 원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17조(전·편입학) 원아가 본원에 전·편입학을 하고자 할 경우 원장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전·편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제18조(수료)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19조(졸업) 원장은 1년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중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에게 따로 정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 6 장 시 상

제20조(시상) 원장은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유아에게 시상할 수 있다.

제 7 장 납입금, 입학금 및 기타의 비용

제21조 삭제

제22조(징벌) 삭제

제8장 유치원 운영위원회

제23조(유치원운영위원회) 1. 유아교육법 제19조 3및 동법 시행령 제 22조 제 2에 따라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2. 유아교육법 제 19조 ④항에 의거한 병설 유치원인 경우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한다.

제9장 방과후과정 운영

제24조(운영방법) 유아교육법 제12조 ②항에 따라 교육과정이후 방과후운영반으로 구성하며 전라북도 방과후과정 운영지침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25조(구성) 본 원에 재학중인 유아로서 학부모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방과후과정을 할 수 있다.

제26조(학급편성) 학급편성은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융통성있게 편성한다.

제27조(교육시간) 1. 방과후과정 운영시간은 교육과정 이후부터 3시간이상 운영하되, 학부모의 동의하에 1시간 이내에서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학기 중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며, 천재지변 및 지역의 특별한 상황, 유치원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 여름·겨울방학 기간중에도 운영할 수 있으며 유치원의 형편이나 유아의 상황 등을 고려한다.

제28조(지원기준 - 당해년도 전라북도교육청유아 학비지원계획)

유치원 교육과정 대상 유아가 방과후과정을 이용하고 교육과정 포함

1일 7~8시간이상의 교육을 받을 경우 방과후학비지원을 받는다.

(단, 보호자의 동의하에 유아의 안전을 확보하고 총 이용시간(8시간이상) 중, 1시간 이내에서 방과후 이용시간 조정 가능함)

학칙 개정

제23조 (규칙 개정) 본원의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본 원 교원협의회 결정에 따라 개정안 내용을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공시한다.

부 칙

1. 본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칙을 시행함에 필요한 세칙은 원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

1. 본 규칙은 2020년 9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칙을 시행함에 필요한 세칙은 교직원 협의 후 원장이 이를 정한다.

2021학년도 유치원 방과후과정 연간 운영 변경계획(안)

안전 번호	7
----------	---

제출년월일: 2021. 4.
제안자: 영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담당자: 교사 최혜현

1. 제안사유

1) 근거

해당 학교의 수요와 유치원운영위원회 자율적 심의(자문) 결과를 토대로 원장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유아교육법 12조 2항, 유아교육법 13조 2항, 전라북도교육청 고시 제2012-16호, 유아교육법 제 19조 3항 신설)

2. 주요 내용

2021학년도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및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3. 세부 내용: 첨부물참조(2021학년도 유치원방과후과정 프로그램(안))

4. 향후 추진 계획

- 가. 방과후시간제교사 선정·계약
- 나. 프로그램 강사 계약
- 다. 프로그램 운영

2021학년도 유치원 방과후과정 프로그램 변경(안)

영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목적

- 가. 교육보육 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실현
- 나. 학부모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제공
- 다. 저소득층 및 맞벌이부부 자녀의 육아부담 경감 및 사교육비를 경감

2. 심의 내용

가. 방과 후 과정 운영기간

- 1) 실시 : 2021. 3. 2 ~ 2022. 2. 28(방학포함)
- 2) 방과후 과정 전담 인력 지원

나. 시간제기간제 교사 계약

- 1) 절차 : 공고 · 면접 · 계약
- 2) 시간 : 교육과정수업외 시간 1일 4시간
- 3) 시간제 기간제 인건비: 전라북도교육청 방과후과정 전담인력 지원계획준수
 - 가) 학기 중 봉급지급액: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보수월액 지급
 - 나) 방학 중 봉급지급액: 보수월액+초과근로수당(전라북도교육청 지침준수)

다.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계획(안) 주요 내용

1)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기간 및 시간

방과 후 과정 운영(안)	운영기간	2021년 3월 2일 ~ 2022년 2월 28일	방학포함	방과후운영 및 운영시간은 유아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운영시간	13시 00분 ~ 17시 00분	교육과정 운영시간 외	

2) 개설 예정 특성화 프로그램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안)	변경 전	변경 후	주 1시간(40분)
	유아체육	유아체육	
	유아국악	유아미술	주 1시간(40분)
	음악분야(세븐큐뮤직)	음악분야(세븐큐뮤직)	주 1시간(40분)

3) 특성화 프로그램강사 수급

가) 외부 강사 모집

(1) 절차: 공고·면접·계약

나) 시간: 교육과정외 시간

(1) 강사료: 시간당 32,000원, 교통비 5,000원 계 37,000원

(전라북도교육청지침에 따라 농어촌지역은 교통비 추가지원)

※ 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2020 회계연도 영원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안전 번호	8
----------	---

발의연월일: 2020. 4.
제안자: 학교운영위원장
담당자: 행정실장

1. 제안이유

- 2020 회계연도 영원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의

2.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 제8항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

3. 주요내용

가.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단위:원)

	사업명	세 입(A)	세 출(B)	잔 액 (C=A-B)	비 고
영원초	2019 이월사업 (송향제지원)	305,290	304,790	500	
	이자수입 (학예활동)	190	120	70	
	졸업생 장학금 및 재학생 학예활동비	2,100,000	1,800,000	300,000	
	합 계	2,405,480	2,104,910	300,570	

붙임 2020 회계연도 영원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 결산보고서 1부. 끝.

2020 회계연도 발전기금 결산 보고서

영원초등학교 운영위원회

1. 세입 세출 결산 총괄표

가. 세입액 :	2,405,480 원
나. 세출액 :	2,104,910 원
다. 잔 액 :	300,570 원

2. 세입결산내역 : "별첨1"과 같음

3. 세출결산내역(사업내역) : "별첨2"과 같음

4. 기타 : "별첨3"과 같음

<별첨1>

2. 세입 결산 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이월금 및 이자수입	접수액	계
2020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사업	305,480	0	305,480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사업	0	2,100,000	2,100,000
합 계	305,480	2,100,000	2,405,480

<별첨2>

3. 세출 결산
내역(사업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세입액	세출내역	잔액
2020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사업	305,480	304,910	570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사업	2,100,000	1,800,000	300,000
합 계	2,405,480	2,104,910	300,570

2020학년도 영원초등학교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안전 번호	9
----------	---

발의연월일: 2020. 4.
제안자: 학교장
제안설명: 행정실장

1. 제안이유

2020학년도 영원초등학교회계 운영에 따른 결산 심의, 회계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 도모

2.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3 제5항 (학교회계의 운영)
- 전라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19조 (예산회계의 결산)

3. 주요내용

■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단위: 원)

구 분	세 입(A)	세 출(B)	세계잉여금 (C=A-B)	비 고
예 산 액(A)	455,840,000	455,840,000	0	
예산현액(B)	460,840,000	460,840,000	0	
결 산 액(C)	460,830,260	447,784,230	13,046,030	

■ 세입결산 내역

(단위: 원)

구분		세입결산액	구성비	비 고
이전수입	중앙정부 이전수입	10,200,000	2.2	
	교특회계 이전수입	420,776,040	91.3	
	기타이전수입 (어울림학교)	3,000,000	0.7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10,225,400	2.2	
	행정활동수입	1,066,550	0.2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15,562,270	3.4	
합 계		460,830,260	100	

■ 세출결산 내역

(단위: 원)

구분	세출결산액	구성비	비 고
인적자원 운용	36,464,400	8.1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106,562,280	23.8	
기본적 교육활동	68,585,260	15.3	
선택적 교육활동	38,527,810	8.6	
교육활동 지원	61,412,220	13.7	
학교 일반운영	135,400,260	30.2	
학교 재무활동	832,000	0.2	
합 계	447,784,230	100	

■ 잉여금 처리상황

(단위: 원)

세계 잉여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보조금 반환 확정액	순세계 잉여금		
세입결산	세출결산	차액			결산전 이입	결산후 이월	소계
460,830,260	447,784,230	13,046,030	0	0	0	13,046,030	13,046,030

붙임 2020학년도 영원초등학교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1부.

2020년도 학교회계 결산총괄표

□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집행년월 : 2021년 03월

(단위 : 원)

예산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세계잉여금(A-B)	비고
455,840,000	460,840,000	460,830,260	447,784,230	13,046,030	

□ 잉여금 처리현황

(단위 : 원)

세계잉여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보조금반환 확정액	순세계잉여금		
세입결산	세출결산	차액	명시	사고	계속비	소계		결산전 이입	결산 후 이월	소계
460,830,260	447,784,230	13,046,030	0	0	0	0	0	7,000,000	6,046,030	13,046,030

□ 세입 결산 내역

(단위 : 원)

장	관	결산액	구성비(%)
이전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	10,200,000	2.2
	지방교육자치단체이전수입	420,776,040	91.3
	기타이전수입	3,000,000	0.7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10,225,400	2.2
	행정활동수입	1,066,550	0.2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15,562,270	3.4
합계		460,830,260	100

□ 세출 결산 내역

(단위 : 원)

정책사업	결산액	구성비(%)

2020년도 학교회계 결산총괄표

인적자원 운용	36,464,400	8.1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106,562,280	23.8
기본적 교육활동	68,585,260	15.3
선택적 교육활동	38,527,810	8.6
교육활동 지원	61,412,220	13.7
학교 일반운영	135,400,260	30.2
학교 재무활동	832,000	0.2
합계	447,784,230	100

2020년도 세입결산서

학 교 명 : 영원초등학교

집행년월 : 2021년 03월

(단위 : 원)

과목				예산액 (A)	예산현액 (B)	결산액 (C)	차액 (B-C)
장	관	항	목				
1. 이전수입				433,981,000	433,981,000	433,976,040	4,960
1. 중앙정부이전수입				10,200,000	10,200,000	10,200,000	0
1. 국고보조금				10,200,000	10,200,000	10,200,000	0
1. 국고보조금				10,200,000	10,200,000	10,200,000	0
2. 지방교육자치단체이전수입				420,781,000	420,781,000	420,776,040	4,960
1.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수입				420,781,000	420,781,000	420,776,040	4,960
1.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420,781,000	420,781,000	420,776,040	4,960
3. 기타이전수입				3,000,000	3,000,000	3,000,000	0
1. 학교회계간이전수입				3,000,000	3,000,000	3,000,000	0
1. 다른학교회계전입금				3,000,000	3,000,000	3,000,000	0
2. 자체수입				11,296,000	11,296,000	11,291,950	4,050
1. 학부모부담수입				10,226,000	10,226,000	10,225,400	600
1. 수익자부담수입				10,226,000	10,226,000	10,225,400	600
1. 급식비				10,226,000	10,226,000	10,225,400	600
2. 행정활동수입				1,070,000	1,070,000	1,066,550	3,450
1. 기타행정활동수입				1,070,000	1,070,000	1,066,550	3,450
1. 이자수입				302,000	302,000	300,220	1,780
2. 기타행정활동수입				768,000	768,000	766,330	1,670
3. 기타수입				10,563,000	15,563,000	15,562,270	730
1. 전년도이월금				10,563,000	15,563,000	15,562,270	730
1. 순세계잉여금				10,563,000	10,563,000	10,562,270	730
1. 순세계잉여금				10,563,000	10,563,000	10,562,270	730
2. 이월금				0	5,000,000	5,000,000	0
1. 이월사업비				0	5,000,000	5,000,000	0
세입합계				455,840,000	460,840,000	460,830,260	9,740

2020년도 세출결산서

학 교 명 : 영원초등학교

집행년월 : 2021년 03월

(단위 : 원)

과목				예산액 (A)	예산현액 (B)	결산액 (C)	차액 (B-C)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1. 인적자원 운용				36,499,000	36,499,000	36,464,400	34,600
1. 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				2,850,000	2,850,000	2,819,740	30,260
1. 교직원복지				2,850,000	2,850,000	2,819,740	30,260
1. 교사동아리				1,650,000	1,650,000	1,639,640	10,360
2. 교사연수비지원				1,200,000	1,200,000	1,180,100	19,900
2. 기타 교직원보수				33,649,000	33,649,000	33,644,660	4,340
1. 교직원대체인건비				33,649,000	33,649,000	33,644,660	4,340
1. 직원대체인건비				1,208,000	1,208,000	1,207,920	80
2. 유치원방과후시간제기간제교사 인건비				30,645,000	30,645,000	30,641,590	3,410
3. 유치원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목적)				586,000	586,000	585,370	630
4. 유치원방과후시간제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목적)				1,210,000	1,210,000	1,209,780	220
2.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106,908,000	106,908,000	106,562,280	345,720
1. 급식 관리				39,903,000	39,903,000	39,810,100	92,900
1. 학교급식운영				39,903,000	39,903,000	39,810,100	92,900
1. 급식재료구입비				26,388,000	26,388,000	26,313,460	74,540
2. 급식운영비				8,151,000	8,151,000	8,136,990	14,010
3. 급식기구확충비				5,224,000	5,224,000	5,220,110	3,890
4. 대체인건비				140,000	140,000	139,540	460
2. 보건관리				17,881,000	17,881,000	17,674,000	207,000
1. 학생및교직원보건안전관리				10,698,000	10,698,000	10,555,080	142,920
1. 학생건강검사				30,000	30,000	23,760	6,240
2. 보건실운영				1,463,000	1,463,000	1,396,640	66,360
3. 보건(성)교육				513,000	513,000	496,800	16,200
4. 학생건강관리				320,000	320,000	295,250	24,750
5. (국고)흡연예방 금연실천학교운영비(목적)				501,000	501,000	500,200	800
6. 전염병예방운영비-유치원(목적)				3,480,000	3,480,000	3,479,120	880
7. 전염병예방운영비-초등(목적)				4,391,000	4,391,000	4,363,310	27,690
2. 학교환경위생관리				7,183,000	7,183,000	7,118,920	64,080

2020년도 세출결산서

학 교 명 : 영원초등학교

집행년월 : 2021년 03월

(단위 : 원)

과목				예산액 (A)	예산현액 (B)	결산액 (C)	차액 (B-C)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1. 먹는물관리	2,253,000	2,253,000	2,188,920	64,080
			2. 공기질측정	880,000	880,000	880,000	0
			3. 방역관리	550,000	550,000	550,000	0
			4. 공기청정기운영	3,500,000	3,500,000	3,500,000	0
		3. 학생복지		49,124,000	49,124,000	49,078,180	45,820
		1. 학생복지운영		49,124,000	49,124,000	49,078,180	45,820
			1. 졸업앨범제작	1,200,000	1,200,000	1,200,000	0
			2. 학생교과서구입	2,063,000	2,063,000	2,024,840	38,160
			3. 통학차량(임차)운영	8,803,000	8,803,000	8,799,370	3,630
			4. 통학택시운영	8,600,000	8,600,000	8,600,000	0
			5. 통학안전지도사인건비	21,658,000	21,658,000	21,653,970	4,030
			6. (국고)아동특별돌봄지원금	6,800,000	6,800,000	6,800,000	0
		3. 기본적 교육활동		66,759,000	70,927,000	68,585,260	2,341,740
		1. 교과 활동		50,819,000	50,819,000	48,525,980	2,293,020
		1. 교과활동지원		28,930,000	28,930,000	28,829,790	100,210
			1. 학습준비물구입	1,140,000	1,140,000	1,133,140	6,860
			2. 교사용교과서(지도서)구입	1,600,000	1,600,000	1,556,510	43,490
			3. 보결수업관리	700,000	700,000	700,000	0
			4. 기초학력지도	1,000,000	1,000,000	992,170	7,830
			5. 행복한삶-배움 프로젝트운영	1,700,000	1,700,000	1,700,000	0
			6. 혁신학년제운영(목적)	5,600,000	5,600,000	5,583,300	16,700
			7. 맞춤형학습지원학교운영(목적)	7,000,000	7,000,000	6,979,570	20,430
			8. 어울림학교협력교육과정운영(목적)	3,000,000	3,000,000	2,996,390	3,610
			9. 영어독서학생동아리운영(목적)	2,000,000	2,000,000	2,000,000	0
			10. 수학학습환경교구구입(목적)	5,000,000	5,000,000	4,998,820	1,180
			11. 과학전람회진출작제작지원(목적)	190,000	190,000	189,890	110
		2. 과학교과활동		2,000,000	2,000,000	1,998,000	2,000
		1. 교과운영		2,000,000	2,000,000	1,998,000	2,000

2020년도 세출결산서

학 교 명 : 영원초등학교

집행년월 : 2021년 03월

(단위 : 원)

과목				예산액 (A)	예산현액 (B)	결산액 (C)	차액 (B-C)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3.	체육교과활동	1,129,000	1,129,000	1,128,710	290
			1. 교과운영	1,129,000	1,129,000	1,128,710	290
		4.	외국어교과활동	1,440,000	1,440,000	1,440,000	0
			1. 원어민 원격화상강의운영학교 지도수당(목적)	1,440,000	1,440,000	1,440,000	0
		5.	선택교과활동	724,000	724,000	699,400	24,600
			1. 스포츠데이운영	724,000	724,000	699,400	24,600
		6.	특수교육교과활동	2,293,000	2,293,000	2,292,800	200
			1. 교과운영	300,000	300,000	300,000	0
			2. 통합교육지원프로그램운영비(목적)	1,000,000	1,000,000	1,000,000	0
			3. 특수교육대상학생통학비지원(목적)	993,000	993,000	992,800	200
		7.	유치원교과활동	14,303,000	14,303,000	12,137,280	2,165,720
			1. 교과운영	4,325,000	4,325,000	3,704,000	621,000
			2. 학습준비물지원	2,350,000	2,350,000	2,081,140	268,860
			3. 누리과정(자체)	1,500,000	1,500,000	1,028,040	471,960
			4. 행사활동	1,765,000	1,765,000	1,386,120	378,880
			5. 현장체험학습활동	1,800,000	1,800,000	1,375,900	424,100
			6. 누리과정지원(목적)	2,563,000	2,563,000	2,562,080	920
		2.	창의적 체험활동	15,940,000	20,108,000	20,059,280	48,720
			1. 자율활동	9,412,000	13,580,000	13,579,010	990
			1. 학생회활동지원	1,500,000	1,500,000	1,499,870	130
			2. 학예회	1,575,000	1,575,000	1,574,140	860
			3. 학급교육활동경비	4,500,000	4,500,000	4,500,000	0
			4. 과학경연대회	11,000	11,000	11,000	0
			5. 정음농악활성화학교운영	1,000,000	5,168,000	5,168,000	0
			6. 계절스포츠체험	540,000	540,000	540,000	0
			7. 1-4학년 체험학습	286,000	286,000	286,000	0
			2. 현장체험학습활동	1,128,000	1,128,000	1,127,500	500
			1. 수학여행	378,000	378,000	377,500	500

2020년도 세출결산서

학 교 명 : 영원초등학교

집행년월 : 2021년 03월

(단위 : 원)

과목				예산액 (A)	예산현액 (B)	결산액 (C)	차액 (B-C)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2. 수학여행(목적)	750,000	750,000	750,000	0
			3. 동아리활동	5,400,000	5,400,000	5,352,770	47,230
			1. 청소년단체활동	300,000	300,000	300,000	0
			2. 학생동아리활동	2,200,000	2,200,000	2,152,770	47,230
			3. 정읍지역연계특색프로그램운영(목적)	2,400,000	2,400,000	2,400,000	0
			4. 스포츠클럽활동운영(목적)	500,000	500,000	500,000	0
			4. 선택적 교육활동	39,405,000	39,405,000	38,527,810	877,190
			1. 방과후학교 운영	30,227,000	30,227,000	29,377,920	849,080
			1. 방과후학교운영	2,000,000	2,000,000	1,997,860	2,140
			1. 특기적성교육	2,000,000	2,000,000	1,997,860	2,140
			2. 돌봄교실운영	25,137,000	25,137,000	25,125,900	11,100
			1. 돌봄교실운영	5,560,000	5,560,000	5,557,250	2,750
			2. 돌봄진담사운영	19,577,000	19,577,000	19,568,650	8,350
			3. 유치원방과후학교운영	3,090,000	3,090,000	2,254,160	835,840
			1.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과정 운영	3,090,000	3,090,000	2,254,160	835,840
			2. 독서활동	9,178,000	9,178,000	9,149,890	28,110
			1. 독서활동운영	9,178,000	9,178,000	9,149,890	28,110
			1. 도서구입	4,500,000	4,500,000	4,500,000	0
			2. 도서관운영	1,600,000	1,600,000	1,599,210	790
			3. 학교도서관 자료확충(오디오북)지원(목적)	3,000,000	3,000,000	2,974,540	25,460
			4. 책꾸러미지원사업(목적)	78,000	78,000	76,140	1,860
			5. 교육활동 지원	62,135,000	62,135,000	61,412,220	722,780
			1. 교무업무 운영	5,621,000	5,621,000	5,552,310	68,690
			1. 교무학사운영	5,621,000	5,621,000	5,552,310	68,690
			1. 교무학사운영	222,000	222,000	221,900	100
			2. 교육활동홍보	800,000	800,000	800,000	0
			3. 입학식 및 졸업식	763,000	763,000	694,410	68,590
			4. 환경정리	3,836,000	3,836,000	3,836,000	0

2020년도 세출결산서

학 교 명 : 영원초등학교

집행년월 : 2021년 03월

(단위 : 원)

과목				예산액 (A)	예산현액 (B)	결산액 (C)	차액 (B-C)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2.	학습지원실 운영	26,801,000	26,801,000	26,298,670	502,330
		1.	방송실운영	3,000,000	3,000,000	2,926,620	73,380
			1. 방송실운영	3,000,000	3,000,000	2,926,620	73,380
		2.	정보화실운영	23,801,000	23,801,000	23,372,050	428,950
			1. 정보화업무 운영	7,401,000	7,401,000	6,983,890	417,110
			2. SW교육 선도학교 운영(목적)	8,000,000	8,000,000	7,990,710	9,290
			3. 원격교육 운영지원(목적)	1,700,000	1,700,000	1,697,450	2,550
			4. 무선AP연결케이블 설치(목적)	1,000,000	1,000,000	1,000,000	0
			5. (국고)온라인교육 인프라 구축	5,700,000	5,700,000	5,700,000	0
		3.	교육여건 개선	26,395,000	26,395,000	26,243,840	151,160
		1.	교육환경개선	26,395,000	26,395,000	26,243,840	151,160
			1. 교실환경개선	6,345,000	6,345,000	6,255,220	89,780
			2. 학교환경개선(유치원다목적실)(목적)	10,050,000	10,050,000	9,994,920	55,080
			3. 학생상담실 리모델링 지원비(목적)	10,000,000	10,000,000	9,993,700	6,300
		4.	생활지도운영	3,318,000	3,318,000	3,317,400	600
		1.	학교폭력예방	3,000,000	3,000,000	2,999,400	600
			1. 학교폭력예방교육운영(목적)	3,000,000	3,000,000	2,999,400	600
		2.	학생안전교육	318,000	318,000	318,000	0
			1. 안전교육	318,000	318,000	318,000	0
		6.	학교 일반운영	144,134,000	144,134,000	135,400,260	8,733,740
		1.	시설 장비 유지	95,873,000	95,873,000	90,002,600	5,870,400
			1. 학교시설장비유지	95,873,000	95,873,000	90,002,600	5,870,400
			1.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23,086,000	23,086,000	22,630,610	455,390
			2. 시설관리용역	10,049,000	10,049,000	10,048,800	200
			3. 시설일반관리	43,410,000	43,410,000	38,009,970	5,400,030
			4. 화장실관리	552,000	552,000	552,000	0
			5. 학교청소원 인건비	18,776,000	18,776,000	18,761,220	14,780
		2.	학교운영 협력	11,700,000	11,700,000	11,686,510	13,490

2020년도 세출결산서

학 교 명 : 영원초등학교

집행년월 : 2021년 03월

(단위 : 원)

과목				예산액 (A)	예산현액 (B)	결산액 (C)	차액 (B-C)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1.	학교운영위원회운영	500,000	500,000	490,950	9,050
			1. 학교운영위원회운영	500,000	500,000	490,950	9,050
		2.	학부모협력	11,200,000	11,200,000	11,195,560	4,440
			1. 학부모회운영	400,000	400,000	395,560	4,440
			2. 학부모교육	600,000	600,000	600,000	0
			3. (국고)농촌 교육, 문화, 복지지원사업	10,200,000	10,200,000	10,200,000	0
		3.	학교기관 운영	36,561,000	36,561,000	33,711,150	2,849,850
			1. 부서기본운영	14,911,000	14,911,000	13,481,830	1,429,170
			1. 교장실운영	4,895,000	4,895,000	4,437,600	457,400
			2. 행정실운영	5,086,000	5,086,000	4,284,370	801,630
			3. 교무실운영	4,930,000	4,930,000	4,759,860	170,140
			2. 병설유치원기본운영	21,650,000	21,650,000	20,229,320	1,420,680
			1. 유치원운영	21,650,000	21,650,000	20,229,320	1,420,680
		7.	학교 재무활동	0	832,000	832,000	0
			1. 반환금	0	832,000	832,000	0
			1. 반환금	0	832,000	832,000	0
			1. 반환금	0	832,000	832,000	0
세출합계				455,840,000	460,840,000	447,784,230	13,055,770

2021학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 번호	10
----------	----

발의연월일: 2021. 4.
제안자: 학교장
제안설명: 행정실장

1. 제안이유

2021학년도 영원초등학교회계 본예산 편성 이후로 교부된 목적사업비 및 2020학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당초 편성된 사업예산의 조정을 통해 학교회계 예산 운용의 효율을 증대하고자 함.

2. 예산 심의 사항

■ 세입·세출현황

(단위: 천원)

예산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1회	387,012	223,830	163,182	72.9				
세입								
장	관	금회	누계	구성비	정책사업	금회	누계	구성비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65,000	65,000	16.8	인적자원 운용	0	5,050	1.3
이전수입	지방교육자치단체이전수입	93,009	295,950	76.3	학생복지/교 육격차해소	35,904	90,702	22.4
이전수입	학부모부담수입	0	13,889	3.6	기본적 교육활동	11,662	45,986	11.9
이전수입	행정활동수입	127	127	0	선택적 교육활동	31,777	48,617	12.5
자체수입	전년도이월금	6,046	13,046	3.4	교육활동 지원	61,521	78,721	20.3
합계		164,182	388,012		학교 일반운영	24,318	112,936	29.1
					학교 재무활동	-1,000	6,000	1.5
					합계	164,182	388,012	

붙임 2021학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부.

2021학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약

(단위 : 원)

구분	세부사업	세부항목	산출내역	요구금액	추경편성요인
세입	기초지방자치단체전입금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보조금(기초)	(성립전_1추)가상현실 스포츠실 보조사업 보조금	60,000,000	목적사업비
		학교교육과정운영지원사업보조금(기초)	(성립전_1추)2021년 경음음악활성화학교 육성 지원사업 보조금	5,000,000	목적사업비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목적사업비전입금	(성립전_1추)통학차량 운영비 (통합버스)	6,210,000	목적사업비
			(성립전_1추)통학차량 운영비 (통합택시)	10,500,000	목적사업비
			(성립전_1추)통합버스안전지도사 인건비(기본급, 수당)	17,432,000	목적사업비
			(성립전_1추)통합버스안전지도사 인건비(퇴직급, 4대보험)	3,311,000	목적사업비
			(성립전_1추)학교청소원인건비 (기본급, 수당 등)	18,086,000	목적사업비
			(성립전_1추)학교청소원인건비 (맞춤형복지비)	500,000	목적사업비
			(성립전_1추)2021 맞춤형학습지원 학교운영비	5,000,000	목적사업비
			(성립전_1추)행복한마을-매옴프로 젝트운영비	1,840,000	목적사업비
			(성립전_1추)2021. 지역연계특색프로그램지 원비	2,000,000	목적사업비
			(성립전_1추)2021년 학교 휴먼예방급연실 친학교 운영비	400,000	목적사업비
			(성립전_1추)2021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운 영비(놀이존연계)	2,300,000	목적사업비
			(성립전_1추)2021학년도초등돌봄진담사맞 춤형복지비	550,000	목적사업비
			(성립전_1추)2021학년도초등돌봄진담사인 건비	4,095,000	목적사업비
			(성립전_1추)2021학년도유치원방과후과정 시간제기간제교사인건비	14,951,000	목적사업비
			(성립전_1추)2021학년도다꿈학교운영비	5,000,000	목적사업비
			(성립전_1추)2021학년도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비	2,000,000	목적사업비
			(성립전_1추)2020년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 간제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1,281,000	목적사업비
			친환경농산물(쌀)지원비	791,000	목적사업비
			친환경농산물(쌀)지원비(시비)	1,023,000	목적사업비
			2021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비	1,000,000	목적사업비
	급식비지원금	무상급식비	-6,383,000	목적사업비	
	현장체험학습비지원금	(성립전_1추)2021학년도 현장체험학습(수 학여행)비	342,000	목적사업비	
	누리과정비지원금	(성립전_1추)유아학비지원금(방과후과정)	300,000	목적사업비	
		(성립전_1추)유아학비지원금(교육과정)	480,000	목적사업비	
	기타행정활동수입	기타행정활동수입	감사지회회수금	127,000	행정활동수입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초)	2,624,000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유치원)	3,422,000	이월금
	합계				164,182,000
세출	학교급식운영	급식재료구입비	식품비	-5,809,000	목적사업비
			친환경농산물(쌀)구입비(목적)	1,814,000	목적사업비
		급식운영비	급식 소모품구입비	-366,000	목적사업비
			급식실 피복비	-208,000	목적사업비
	학생및교직원보건의안진관리	휴먼예방 급연실친학교운영(목적)	(성립전_1추)휴먼및약물예방교육	400,000	목적사업비
	학교환경위생관리	먹는물관리	정수기관리	320,000	조정중역
	교육복지우선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운영(목적)	(성립전_1추)상담비	800,000	목적사업비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운영(목적)	(성립전_1추)행복동행운영비	1,500,000	목적사업비
	학생복지운영	통학차량(임차)운영	(성립전_1추)차량유지비	2,900,000	목적사업비
			(성립전_1추)차량유류비	3,000,000	목적사업비
			(성립전_1추)블랙박스구입	310,000	목적사업비
		통합택시운영	(성립전_1추)통합택시운영	10,500,000	목적사업비
			(성립전_1추)인건비	16,882,000	목적사업비
		통합안전지도사인건비	(성립전_1추)퇴직적립금	1,331,000	목적사업비
			(성립전_1추)맞춤형복지비	550,000	목적사업비
(성립전_1추)4대보험기관부담금			1,980,000	목적사업비	

세출	교과활동지원	맞춤형학습지원학교운영(목적)	(성립전_1추)기초학력지도강사비	2,944,000	목적사업비
			(성립전_1추)책임지역량강화강사비	500,000	목적사업비
			(성립전_1추)언어재활사강사비	1,100,000	목적사업비
			(성립전_1추)기초학력교재구입	31,000	목적사업비
			(성립전_1추)심층진단검사비	425,000	목적사업비
	유치원 교과활동	누리과정(유아학비)지원(목적)	(성립전_1추)교과과정운영비	480,000	목적사업비
	자율활동	1-4학년 체험학습 행복한마을/삶배움프로젝트운영(목적) 지역연계특색프로그램운영(목적)	1-4학년체험학습운영비	1,000,000	조정중액
			(성립전_1추)1-6학년프로젝트운영비	1,840,000	목적사업비
			(성립전_1추)강사비	1,408,000	목적사업비
	현장체험학습활동	수학여행	(성립전_1추)차량임차료(목적)	342,000	목적사업비
			(성립전_1추)재료비	592,000	목적사업비
	동아리활동	스포츠클럽활동운영(목적)	스포츠클럽활동물품구입	1,000,000	목적사업비
	방과후학교운영	정유농악활성화학교운영(목적)	(성립전_1추)강사비	4,288,000	목적사업비
			(성립전_1추)농악기및의상구입	712,000	목적사업비
	돌봄교실운영	돌봄전담사운영	(성립전_1추)인건비	3,705,000	목적사업비
			(성립전_1추)맞춤형복지비	550,000	목적사업비
			(성립전_1추)4대보험기관부담금	390,000	목적사업비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과정 운영	차량운영비	400,000	조정중액
			소모품비	200,000	조정중액
		유치원 방과후 시간제기간제교사운영(목적)	(성립전_1추)인건비	13,606,000	목적사업비
(성립전_1추)성과상여금			1,281,000	목적사업비	
(성립전_1추)4대보험기관부담금			1,345,000	목적사업비	
누리과정(유아학비)지원(목적)	(성립전_1추)방과후과정운영비	300,000	목적사업비		
다문화교육운영	다문화교육운영(목적)	(성립전_1추)앨범제작	900,000	목적사업비	
		(성립전_1추)가족체험활동	2,100,000	목적사업비	
		(성립전_1추)보드게임구입	500,000	목적사업비	
		(성립전_1추)다문화교육운영	1,500,000	목적사업비	
		(성립전_1추)다문화교육운영	1,500,000	목적사업비	
교무학사운영	환경정리	교내환경물품 구입	-400,000	조정감액	
		분리수거함 구입	-46,000	조정감액	
		장당청소기 구입	-34,000	조정감액	
학교폭력예방	학교폭력예방교육운영(목적)	(성립전_1추)이울림프로그램운영비	1,800,000	목적사업비	
		(성립전_1추)운영물품	200,000	목적사업비	
교육환경개선	가상현실스포츠실구축사업(목적)	(성립전_1추)인테리어 공사비	15,000,000	목적사업비	
		멀티미디어학습장치 외 5종 구입	1,000	조정중액	
		(성립전_1추)멀티미디어학습장치 외 5종 구입	45,000,000	목적사업비	
병설유치원기본운영	유치원운영	소규모시설수선	2,519,000	조정중액	
		사무용품비(토너, 복사용지)	400,000	조정중액	
		CCTV유지관리	220,000	조정중액	
		놀이시설정기검사수수료	183,000	조정중액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운영비	-1,200,000	조정감액	
		비품구입	200,000	조정중액	
		비품구입	200,000	조정중액	
학교시설장비유지	시설관리용역	CCTV유지관리	990,000	조정중액	
		시설소모품구입	572,000	조정중액	
	시설일반관리	놀이시설정기검사수수료	224,000	조정중액	
		교직원외자구입	1,624,000	조정중액	
	학교청소원 인건비	(성립전_1추)인건비	17,126,000	목적사업비	
		(성립전_1추)맞춤형복지비	500,000	목적사업비	
		(성립전_1추)4대보험기관부담금	960,000	목적사업비	
에비비	유치원에비비	에비비(유치원)	-1,000,000	조정감액	
합계			164,182,000		

2021학년도 세입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과 목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출기초(원)	비고
장	관	항	목					
1. 이전수입				360,950	202,941	158,009		
1.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65,000	0	65,000		
1. 교육경비보조금				65,000	0	65,000		
1. 기초지방자치단체전입금				65,000	0	65,000		
1.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보조금(기초)				60,000	0	60,000	(성립전_1추)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보조금 : 60,000,000원*1교=	60,000,000
2. 학교교육과정운영지원사업보조금(기초)				5,000	0	5,000	(성립전_1추)2021년 정읍농악활성화학교 육성지원사업 보조금 : 5,000,000원*1교=	5,000,000
2. 지방교육자치단체이전수입				295,950	202,941	93,009		
1.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수입				295,950	202,941	93,009		
1.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95,950	202,941	93,009		
1. 학교운영비전입금				176,897	176,897	0		
2. 목적사업비전입금				98,270	0	98,270	(성립전_1추)통학차량 운영비(통학버스) : 6,210,000원 * 1교 =	6,210,000
							(성립전_1추)통학차량 운영비(통학택시) : 10,500,000원 * 1교 =	10,500,000
							(성립전_1추)통학버스안전지도사 인건비(기본급, 수당) : 17,432,000원 * 1교 =	17,432,000
							(성립전_1추)통학버스안전지도사 인건비(퇴직금, 4대보험) : 3,311,000원 * 1교 =	3,311,000
							(성립전_1추)학교청소원인건비(기본급, 수당 등) : 18,086,000원 * 1교 =	18,086,000
							(성립전_1추)학교청소원인건비(맞춤형복지비) : 500,000원 * 1교 =	500,000
							(성립전_1추)2021 맞춤형학습지원학교운영비 : 5,000,000원 * 1교 =	5,000,000
							(성립전_1추)행복한마을-배움프로젝트운영비 : 1,840,000원 * 1교 =	1,840,000
							(성립전_1추)2021. 지역연계특색프로그램지원비 : 2,000,000원 * 1교 =	2,000,000
							(성립전_1추)2021년 학교 흡연예방금연실천학교 운영비 : 400,000원 * 1교 =	400,000
							(성립전_1추)2021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운영비(농어촌연계) : 2,300,000원 * 1교 =	2,300,000
							(성립전_1추)2021학년도초등돌봄전담사맞춤형복지비 : 550,000원 * 1교 =	550,000
							(성립전_1추)2021학년도초등돌봄전담사인건비 : 4,095,000원 * 1교 =	4,095,000
							(성립전_1추)2021학년도유치원방과후과정시간제기간제교사인건비 : 14,951,000원 * 1교 =	14,951,000
							(성립전_1추)2021학년도다꿈학교운영비 : 5,000,000원 * 1교 =	5,000,000
							(성립전_1추)2021학년도학교폭력예방교육운영비 : 2,000,000원 * 1교 =	2,000,000
							(성립전_1추)2020년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 1,281,000원 * 1교 =	1,281,000
							친환경농산물(쌀)지원비 : 791,000원 * 1교 =	791,000

2021학년도 세입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과 목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출기초(원)	비고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비목					
								친환경농산물(쌀)지원비(시비) : 1,023,000원 * 1교 = 1,023,000	
								2021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비 : 1,000,000원 * 1교 = 1,000,000	
				3. 급식비지원금	18,341	24,724	-6,383	무상급식비 : -6,383,000원 * 1교 = -6,383,000	
				4. 돌봄활동운영비지원금	1,320	1,320	0		
				5. 현장체험학습비지원금	342	0	342	(성립전_1추)2021학년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비 : 342,000원 * 1교 = 342,000	
				6. 누리과정비지원금	780	0	780	(성립전_1추)유아학비지원금(방과후과정) : 300,000원 * 1교 = 300,000	
								(성립전_1추)유아학비지원금(교육과정) : 480,000원 * 1교 = 480,000	
2. 자체수입					14,016	13,889	127		
1. 학부모부담수입					13,889	13,889	0		
1. 수익자부담수입					13,889	13,889	0		
1. 급식비					13,889	13,889	0		
1. 급식비					13,889	13,889	0		
2. 행정활동수입					127	0	127		
1. 기타행정활동수입					127	0	127		
1. 기타행정활동수입					127	0	127		
1. 기타행정활동수입					127	0	127	감사지적회수금 : 127,000원*1회= 127,000	
3. 기타수입					13,046	7,000	6,046		
1. 전년도이월금					13,046	7,000	6,046		
1. 순세계잉여금					13,046	7,000	6,046		
1. 순세계잉여금					13,046	7,000	6,046		
1. 순세계잉여금					13,046	7,000	6,046	순세계잉여금(초) : 2,624,000원*1교= 2,624,000	
1. 순세계잉여금					13,046	7,000	6,046	순세계잉여금(유치원) : 3,422,000원*1교= 3,422,000	
세입합계					388,012	223,830	164,182		

2021학년도 세출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사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1. 인적자원 운용					5,050	5,050	0	
1. 기타 교직원보수					800	800	0	
1. 교직원대체인건비					800	800	0	
1. [초]직원대체인건비					800	800	0	
1. 기간제직원인건비					800	800	0	
2. 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					4,250	4,250	0	
1. 교직원복지					4,250	4,250	0	
1. [초]교사동아리					2,250	2,250	0	
1. 일반수용비					1,000	1,000	0	
2. 운영수당					1,000	1,000	0	
3. 일반업무추진비					250	250	0	
2. [초]교육과정위크숍					500	500	0	
1. 일반업무추진비					500	500	0	
3. [초]교사연수비지원					1,500	1,500	0	
1. 운영수당					1,500	1,500	0	
2.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90,702	54,798	35,904	
1. 급식 관리					36,720	41,289	-4,569	
1. 학교급식운영					36,720	41,289	-4,569	
1. [초]급식재료구입비					31,253	35,248	-3,995	
1. 급식용식재료비					31,253	35,248	-3,995	식품비 : -58,090원*100종*1회= -5,809,000
								친환경농산물(쌀)구입비(목적) : 18,140원*50종*2회= 1,814,000
2. [초]급식운영비					5,122	5,696	-574	
1. 일반수용비					2,522	3,096	-574	급식 소모품구입비 : -91,500원*4종*1회= -366,000
								급식실 피복비 : -52,000원*4개*1회= -208,000
2. 연료비					2,600	2,600	0	
3. [초]대체인건비					345	345	0	
1. 기간제직원인건비					345	345	0	
2. 보건관리					12,180	11,460	720	

2021학년도 세출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사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1.	[국고]학생및교직원보건안전관리		4,292	3,892	400	
		1.	[초]응급학생후송비		100	100	0	
			1. 학생복지비		100	100	0	
		2.	[초]학생건강검사		592	592	0	
			1. 학생복지비		592	592	0	
		3.	[초]보건실운영		2,500	2,500	0	
			1. 일반수용비		2,100	2,100	0	
			2. 학생복지비		400	400	0	
		4.	[초]보건(성)교육		700	700	0	
			1. 교육운영비		700	700	0	
		5.	[국고][초](국고)흡연예방 금연 실천학 400명(목적)		400	0	400	
			1. 교육운영비		400	0	400	(성립전_1추)흡연및약물예방교육 : 400,000원*1교*1회= 400,000
		2.	학교환경위생관리		7,888	7,568	320	
		1.	[초]먹는물관리		2,558	2,238	320	
			1. 일반수용비		2,558	2,238	320	정수기관리 : 32,000원*1개*10개월= 320,000
		2.	[초]공기질측정		880	880	0	
			1. 일반수용비		880	880	0	
		3.	[초]방역관리		650	650	0	
			1. 일반수용비		650	650	0	
		4.	[초]어린이활동공간관리		300	300	0	
			1. 일반수용비		300	300	0	
		5.	[초]공기청정기운영		3,500	3,500	0	
			1. 일반수용비		3,500	3,500	0	
		3.	학생복지		41,802	2,049	39,753	
		1.	교육복지우선		2,300	0	2,300	
		1.	[초]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운영(목적)		2,300	0	2,300	
			1. 운영수당		800	0	800	(성립전_1추)상담비 : 50,000원*2명*8회= 800,000
			2. 교육운영비		1,500	0	1,500	(성립전_1추)행복동행운영비 : 50,000원*3팀*10회= 1,500,000

2021학년도 세출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사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2. 학생복지운영			39,502	2,049	37,453	
		1. [초] 학생교과서구입			2,049	2,049	0	
			1. 교육운영비		2,049	2,049	0	
		2. [초] 통학차량(임차)운영			6,210	0	6,210	
			1. 일반수용비		2,900	0	2,900	(성립전_1추)차량유지비 : 50,000원*1대*58회= 2,900,000
			2. 연료비		3,000	0	3,000	(성립전_1추)차량유류비 : 1,200원*250리터*10회= 3,000,000
			3. 비품구입비		310	0	310	(성립전_1추)블랙박스구입 : 310,000원*1개*1회= 310,000
		3. [초] 통학택시운영			10,500	0	10,500	
			1. 일반수용비		10,500	0	10,500	(성립전_1추)통학택시운영 : 50,000원*1교*210일= 10,500,000
		4. [초] 통학안전지도사인건비			20,743	0	20,743	
			1. 무기계약직원인건비		18,213	0	18,213	(성립전_1추)인건비 : 1,406,830원*1명*12개월= 16,882,000 (성립전_1추)퇴직적립금 : 1,331,000원*1명*1회= 1,331,000
			2. 맞춤형복지비		550	0	550	(성립전_1추)맞춤형복지비 : 550,000원*1명*1회= 550,000
			3. 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1,980	0	1,980	(성립전_1추)4대보험기관부담금 : 165,000원*1명*12월= 1,980,000
		3. 기본적 교육활동			45,986	34,324	11,662	
		1. 교과 활동			21,160	15,680	5,480	
		1. 교과활동지원			9,680	4,680	5,000	
			1. [초] 학습준비물구입		1,080	1,080	0	
			1. 학습준비물		1,080	1,080	0	
			2. [초] 교사용 교과서(지도서)구입		1,600	1,600	0	
			1. 교육운영비		1,600	1,600	0	
			3. [초] 보결수업관리		1,000	1,000	0	
			1. 운영수당		1,000	1,000	0	
			4. [초] 기초학력지도		1,000	1,000	0	
			1. 교육운영비		1,000	1,000	0	
			5. [초] 맞춤형 학습지원 학교운영(목적)		5,000	0	5,000	
			1. 운영수당		4,544	0	4,544	(성립전_1추)기초학력지도강사비 : 32,000원*23시간*4명= 2,944,000 (성립전_1추)책임기역량강화강사비 : 250,000원*1명*2회= 500,000

2021학년도 세출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사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성립전_1추)언어재활사강사비 : 55,000원 *2명*10회= 1,100,000
				2. 교육운영비	456	0	456	(성립전_1추)기초학력교재구입 : 31,000원 *1종*1회= 31,000
								(성립전_1추)심층진단검사비 : 14,160원 *30명*1회= 425,000
			2. 과학 교과활동		2,600	2,600	0	
			1. [초]교과운영		2,600	2,600	0	
				1. 교육운영비	2,000	2,000	0	
				2. 비품구입비	600	600	0	
			3. 체육 교과활동		1,400	1,400	0	
			1. [초]교과운영		1,400	1,400	0	
				1. 일반수용비	300	300	0	
				2. 교육운영비	1,100	1,100	0	
			4. 특수교육교과활동		300	300	0	
			1. [초]교과운영		300	300	0	
				1. 교육운영비	300	300	0	
			5. 유치원 교과활동		7,180	6,700	480	
			1. [초]교과운영		1,950	1,950	0	
				1. 운영수당	1,900	1,900	0	
				2. 교육운영비	50	50	0	
			2. [초]학습준비물지원		1,300	1,300	0	
				1. 교육운영비	700	700	0	
				2. 학습준비물	400	400	0	
				3. 비품구입비	200	200	0	
			3. [초]행사활동		1,950	1,950	0	
				1. 교육운영비	1,950	1,950	0	
			4. [초]현장체험학습활동		1,500	1,500	0	
				1. 교육운영비	1,500	1,500	0	
			5. [유]누리과정(유아학비)지원(목적)		480	0	480	
				1. 교육운영비	480	0	480	(성립전_1추)교육과정운영비 : 80,000원*2 명*3개월= 480,000

2021학년도 세출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사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2. 창의적 체험활동		24,826	18,644	6,182	
			1. 자율활동		16,400	11,560	4,840	
			1. [초] 학생회활동지원		1,500	1,500	0	
			1. 교육운영비		1,500	1,500	0	
			2. [초] 학예회		4,000	4,000	0	
			1. 교육운영비		4,000	4,000	0	
			3. [초] 학급교육활동경비		2,400	2,400	0	
			1. 교육운영비		2,400	2,400	0	
			4. [초] 과학경연대회		240	240	0	
			1. 교육운영비		240	240	0	
			5. [초] 체육대회		100	100	0	
			1. 교육운영비		100	100	0	
			6. [초] 정읍농악활성화학교운영		1,000	1,000	0	
			1. 교육운영비		1,000	1,000	0	
			7. [초] 계절스포츠체험		1,200	1,200	0	
			1. 교육운영비		1,200	1,200	0	
			8. [초] 1-4학년 체험학습		2,120	1,120	1,000	
			1. 교육운영비		2,120	1,120	1,000	1-4학년체험학습운영비 : 500,000원*1교*2회= 1,000,000
			9. [초] 행복마을/삶배움프로젝트운영(목적)0		0	0	1,840	
			1. 교육운영비		1,840	0	1,840	(성립전_1추)1-6학년프로젝트운영비 : 306,660원*6학급*1회= 1,840,000
			10. [초] 지역연계특색프로그램운영(목적)2,000		2,000	0	2,000	
			1. 운영수당		1,408	0	1,408	(성립전_1추)강사비 : 32,000원*22시간*2명= 1,408,000
			2. 교육운영비		592	0	592	(성립전_1추)재료비 : 49,330원*12명*1회= 592,000
			2. 현장체험학습활동		4,342	4,000	342	
			1. [초] 수학여행		4,342	4,000	342	
			1. 여비		200	200	0	
			2. 교육운영비		4,142	3,800	342	(성립전_1추)차량임차료(목적) : 342,000원*1대*1회= 342,000
			3. 동아리활동		4,084	3,084	1,000	

2021학년도 세출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사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1.[초]청소년단체활동		500	500	0	
			1.학생복지비		500	500	0	
			2.[초]학생동아리활동		2,584	2,584	0	
			1.운영수당		384	384	0	
			2.교육운영비		2,200	2,200	0	
			3.[초]스포츠클럽활동운영(목적)		1,000	0	1,000	
			1.교육운영비		1,000	0	1,000	스포츠클럽활동물품구입 : 100,000원*5종*2회= 1,000,000
			4.선택적 교육활동		48,617	16,840	31,777	
			1.방과후학교 운영		37,317	10,540	26,777	
			1.방과후학교운영		7,000	2,000	5,000	
			1.[초]특기적성교육		2,000	2,000	0	
			1.교육운영비		2,000	2,000	0	
			2.[초]정읍농악활성화학교운영(목적)		5,000	0	5,000	
			1.운영수당		4,288	0	4,288	(성립전_1추)강사비 : 32,000원*1명*134시간= 4,288,000
			2.교육운영비		712	0	712	(성립전_1추)농악기및의상구입 : 71,200원*10종*1회= 712,000
			2.돌봄교실운영		5,965	1,320	4,645	
			1.[초]돌봄교실운영		1,320	1,320	0	
			1.교육운영비		1,320	1,320	0	
			2.[초]돌봄전담사운영		4,645	0	4,645	
			1.무기계약직원인건비		3,705	0	3,705	(성립전_1추)인건비 : 1,235,000원*1명*3개월= 3,705,000
			2.맞춤형복지비		550	0	550	(성립전_1추)맞춤형복지비 : 550,000원*1명*1회= 550,000
			3.무기계약직원법정부담금		390	0	390	(성립전_1추)4대보험기관부담금 : 130,000원*1명*3개월= 390,000
			3.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24,352	7,220	17,132	
			1.[초]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과정 운영		7,820	7,220	600	
			1.운영수당		4,440	4,440	0	
			2.교육운영비		3,380	2,780	600	차량운영비 : 200,000원*1개월*2회= 400,000 소모품비 : 50,000원*4종*1회= 200,000
			2.[유]유치원 방과후 시간제기간제교사(목적)		16,232	0	16,232	

2021학년도 세출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사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1.기간제교원인건비	14,887	0	14,887	(성립전_1추)인건비 : 2,267,660원*1명*6 개월= 13,606,000
								(성립전_1추)성과상여금 : 1,281,000원*1 명*1회= 1,281,000
				2.기간제교원법정부담금	1,345	0	1,345	(성립전_1추)4대보험기관부담금 : 224,160 원*1명*6개월= 1,345,000
				3.[유]누리과정(유아학비)지원(목적)	300	0	300	
				1.교육운영비	300	0	300	(성립전_1추)방과후과정운영비 : 50,000원 *2명*3개월= 300,000
			2.독서활동		6,300	6,300	0	
			1.독서활동운영		6,300	6,300	0	
			1.[초]도서구입		4,200	4,200	0	
				1.도서구입비	4,200	4,200	0	
			2.[초]도서관운영		2,100	2,100	0	
				1.교육운영비	2,100	2,100	0	
			3.기타 선택적 교육활동		5,000	0	5,000	
			1.다문화교육운영		5,000	0	5,000	
			1.[초]다꿈학교운영(목적)		5,000	0	5,000	
				1.교육운영비	5,000	0	5,000	(성립전_1추)앨범제작 : 30,000원*30명*1 회= 900,000
								(성립전_1추)가족체험활동 : 100,000원*21 세대*1회= 2,100,000
								(성립전_1추)보드게임구입 : 50,000원*10 종*1회= 500,000
								(성립전_1추)다문화교육운영 : 250,000원 *6학년*1회= 1,500,000
			5.교육활동 지원		78,721	17,200	61,521	
			1.교무업무 운영		7,720	8,200	-480	
			1.교무학사운영		7,720	8,200	-480	
			1.[초]교무학사운영		1,100	1,100	0	
				1.교육운영비	900	900	0	
				2.일반업무추진비	200	200	0	
			2.[초]교육활동홍보		2,000	2,000	0	
				1.교육운영비	2,000	2,000	0	
			3.[초]입학식 및 졸업식		1,000	1,000	0	
				1.교육운영비	1,000	1,000	0	

2021학년도 세출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사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4.[초]환경정리		3,620	4,100	-480	
			1.일반수용비		2,900	3,300	-400	교내환경물품 구입 : -50,000원*8종*1회= -400,000
			2.비품구입비		720	800	-80	분리수거함 구입 : -46,000원*1종*1회= -46,000 강당청소기 구입 : -34,000원*1종*1회= -34,000
			2.생활지도운영		2,000	0	2,000	
			1.학교폭력예방		2,000	0	2,000	
			1.[초]학교폭력예방교육운영(목적)		2,000	0	2,000	
			1.교육운영비		2,000	0	2,000	(성립전_1추)어울림프로그램운영비 : 1,800,000 300,000원*6학년*1회= (성립전_1추)운영물품 : 50,000원*4종*1회 = 200,000
			3.학습지원실 운영		9,000	9,000	0	
			1.방송실운영		500	500	0	
			1.[초]방송실운영		500	500	0	
			1.비품구입비		500	500	0	
			2.정보화실운영		8,500	8,500	0	
			1.[초]정보화업무 운영		8,500	8,500	0	
			1.교육운영비		2,500	2,500	0	
			2.비품구입비		5,400	5,400	0	
			3.기타자산취득비		600	600	0	
			4.교육여건 개선		60,001	0	60,001	
			1.교육환경개선		60,001	0	60,001	
			1.[초]가상현실스포츠실구축사업(목적)		60,001	0	60,001	
			1.일반수용비		15,000	0	15,000	(성립전_1추)인테리어 공사비 : 15,000,000원*1교*1회= 15,000,000
			2.비품구입비		45,001	0	45,001	멀티미디어학습장치 외 5종 구입 : 1,000원*1종*1회= 1,000 (성립전_1추)멀티미디어학습장치 외 5종 구입 : 7,500,000원*6종*1회= 45,000,000
			6.학교 일반운영		112,936	88,618	24,318	
			1.학교기관 운영		39,094	36,772	2,322	
			1.부서기본운영		17,743	17,743	0	
			1.[초]교장실운영		4,260	4,260	0	

2021학년도 세출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사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1. 일반수용비	300	300	0	
				2. 여비	600	600	0	
				3. 일반업무추진비	360	360	0	
				4. 직책급업무수행경비	3,000	3,000	0	
			2. [초] 행정실운영		4,983	4,983	0	
				1. 일반수용비	2,783	2,783	0	
				2. 여비	1,800	1,800	0	
				3. 교직원복지비	400	400	0	
			3. [초] 교무실운영		8,500	8,500	0	
				1. 일반수용비	1,620	1,620	0	
				2. 여비	5,000	5,000	0	
				3. 일반업무추진비	1,880	1,880	0	
			2. 병설유치원기본운영		21,351	19,029	2,322	
			1. [초] 유치원운영		21,351	19,029	2,322	
				1. 일반수용비	7,992	4,670	3,322	소규모시설수선 : 503,800원*1개월*5회= 2,519,000
								사무용품비(토너, 복사용지) : 100,000원*4개*1회= 400,000
								CCTV유지관리 : 110,000원*1개월*2개월= 220,000
								놀이시설정기검사수수료 : 36,600원*5종*1회= 183,000
				2. 운영수당	5,580	6,780	-1,200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운영비 : -600,000원*1명*2개월= -1,200,000
				3. 전기요금	3,000	3,000	0	
				4. 상하수도료	1,800	1,800	0	
				5. 기타공공요금	1,399	1,399	0	
				6. 여비	680	680	0	
				7. 학생복지비	600	600	0	
				8. 일반업무추진비	100	100	0	
				9. 비품구입비	200	0	200	비품구입 : 200,000원*1종*1회= 200,000
			2. 시설 장비 유지		72,342	50,346	21,996	
			1. 학교시설장비유지		72,342	50,346	21,996	

2021학년도 세출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사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1. [초]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22,045	22,045	0	
			1. 전기요금		12,000	12,000	0	
			2. 상하수도료		5,400	5,400	0	
			3. 기타공공요금		4,645	4,645	0	
			2. [초] 시설관리용역		9,939	8,949	990	
			1. 일반수용비		9,939	8,949	990	CCTV유지관리 : 110,000원*1교*9개월= 990,000
			3. [초] 시설일반관리		21,220	18,800	2,420	
			1. 일반수용비		18,596	17,800	796	시설소모품구입 : 22,880원*5종*5회= 572,000 높이시설정기검사수수료 : 44,800원*5종*1회= 224,000
			2. 비품구입비		2,624	1,000	1,624	교직원 의자구입 : 203,000원*8개*1회= 1,624,000
			4. [초] 화장실관리		552	552	0	
			1. 일반수용비		552	552	0	
			5. [초] 학교청소원 인건비		18,586	0	18,586	
			1. 기간제직원인건비		17,126	0	17,126	(성립전_1추)인건비 : 1,427,160원*1명*12월= 17,126,000
			2. 맞춤형복지비		500	0	500	(성립전_1추)맞춤형복지비 : 500,000원*1명*1회= 500,000
			3. 기간제직원법정부담금		960	0	960	(성립전_1추)4대보험기관부담금 : 80,000원*1명*12월= 960,000
			3. 학교운영 협력		1,500	1,500	0	
			1. 학교운영위원회운영		500	500	0	
			1. [초] 학교운영위원회운영		500	500	0	
			1. 일반업무추진비		500	500	0	
			2. 학부모협력		1,000	1,000	0	
			1. [초] 학부모회운영		400	400	0	
			1. 일반업무추진비		400	400	0	
			2. [초] 학부모교육		600	600	0	
			1. 운영수당		600	600	0	
			7. 학교 재무활동		6,000	7,000	-1,000	
			1. 예비비		6,000	7,000	-1,000	
			1. 예비비		6,000	7,000	-1,000	

2021학년도 세출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사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1. [초]예비비		6,000	6,000	0	
				1. 예비비	6,000	6,000	0	
			2. [초]유치원예비비		0	1,000	-1,000	
				1. 예비비	0	1,000	-1,000	예비비(유치원) : -1,000,000원*1개월*1회 = -1,000,000
세출합계					388,012	223,830	164,182	